#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전임지도자 채용 공고

■모집인원: 1명(남.여 구분없음)

## ■접수기간

- 가. 2021년 9월 17일(금) ~ 9월 27일(월) 오후 12:00
- 나. 서류접수 합격자에 한 해 구두면접 실시
- 다. 면접일 2021년 9월 29일(수) ※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
### ■접수방법

- 가. 아래 자격요건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본회 이메일(kotad@hanmail.net)로 접수.
- 나.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는 '성명: 000 전임지도자 모집 접수'로 기재 바람.
- ■자격요건: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관리지침 제4조, 제5조, 제9조 참고<아래>

#### -아 래-

제4조(자격요건)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- 2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자
- 3.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 지 도 경력이 있는자
- 4.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

제5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7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 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- 8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ㆍ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

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(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)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)

- 9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,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- 10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- 11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- 12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- 1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- 14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- 15. 협회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
## 제9조(복무)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협회의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ㆍ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
- 2.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- 3. 협회의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
- 4. 해당 종목의 국내·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
- 5.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
- 6.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

#### ■접수서류(필수)

가. 이력서(본회 양식 첨부), 이력서상 기재된 학력사항과 기타경력사항의 경우 졸업증명서 등의 입증 서류 반드시 첨부

나. 경력증명서(아래 1, 2호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중 태권도 선수경력, 장애인태권도 경기지도 경력 만 인정)

#### ※ 선수경력 및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정의

	- 대한장애인체육회(대한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
선수경력	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의 선수 경력(연도수) 산정
	-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
장애인	-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17개시도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
경기지도경력	광부 지정 장애인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

의 지도 경력(연도수) 산정 -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

다. 장애인올림픽(농아인올림픽) 태권도종목 입상경력, 아시아경기대회(아시안게임) 태권도 종목 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입상자의 경우 선수경력증명서 제출

라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\*\*상기 서류 미비자는 접수를 불가하며,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가 적발시 본회 법제상벌위 원회에 징계 회부하며,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.

■근무기간: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, 근무기간 종료 후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.

■근무지: 본회 사무국 및 국내출장, 상황에 따라 국외출장도 발생할 수 있음.

■급여: 월 300만원 / 월(세전금액), 4대 보험, 퇴직충당금 별도)+@

■접수문의: 본회 사무국(02-424-5982, 3)

붙임 전임지도자 운영규정 1부. 끝.